

#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3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8.

발의자 : 박정하 · 이양수 · 권성동  
이철규 · 유상범 · 송기현  
조은희 · 지성호 · 박덕흠  
이종성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('19~'23년)에 따라 지역 강점을 살린 전문과학관의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과학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, 2025년 2월 완공·개관에 따른 법인화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).



##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국립강원전문과학관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설립 준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,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③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.

-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자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-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주시장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)</p> <p>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, 학교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② ~ ⑤ (생략)</p>	<p>제6조의2(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)</p> <p>①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          1. ~ 3. (현행과 같음)  <u>4. 국립강원전문과학관</u>         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